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6)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정리 대외홍보팀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지 (제19차~23차)

제19차 개정<법률 제8475호, 2007. 5. 17.>

[일부 개정]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로 하여금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 등을 부착하게 하고,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원인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원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측정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사업의 보조·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부의 보조·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제20차 개정<법률 제8486호, 2007. 5. 25.>

산업표준화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표준화법 전부개정

[2007. 5. 25, 법률 제848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보호구



⑩부터 ㉓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21차 개정<법률 제8562호, 2007.7.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고,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1997년 4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이들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 신설)
 도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함.
- ② 직무교육 대상자의 조정(법 제32조제1항)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및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교육 대상자에서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③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 제도의 개편(법 제34조 및 제35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 장치·보호구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④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 신설)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일원화하되,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정한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 ⑤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법 제39조의2 신설 및 법 제72조제1항제1호)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의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법 제48조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22차 개정<법률 제8694호, 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
[2007. 12. 14, 법률 제869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23차 개정<법률 제9319호, 2008.12.31.>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국산업안전공단법

[2008. 12. 31, 법률 제9319호]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6조 생략